

공 시 송 달 공 고

우편법 제19조 및 동법 제24조 또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동법 제73조에 의거하여 부과한 후납우편료 또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여 독촉고지 등 등기송달 하였으나, 주소(수취인)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,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(공고)합니다.

1. 제 목 : 후납우편료 또는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

2. 근거법규

가. 우편법 제19조 및 동법 제24조

나.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동법 제73조

다. 국세기본법 제11조

라.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

마.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

3. 공고기간 : 2025. 8. 8. ~ 2025. 8. 22.(15일간)

4. 공고대상자 및 내역

체 납 자		체 납 내 역		
성 명	주 소	징수결의번호	부과금액	징수 과목명
※ 세부내역 불임 참조 ※				

5. 공고기간 내에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인근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,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 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[☎063)240-3585]로 문의 바랍니다.

2025년 8월 8일

전 북 지 방 우 정 청

체 납 자		체 납 내 역		
성 명	주 소	징수결의번호	부과금액(원)	징수과목명
대*	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매*1*길 2*, 3층	122460612 외 1건	409,240	후납우편료
한*푸드	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메**3길 1*-1*	122759907 외 3건	1,555,960	후납우편료
(유)제*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탑*로 2**	124422168 외 1건	276,500	후납우편료
전북**신문 김제지사	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*로 7*	123419843 외 19건	956,400	후납우편료
다**드시스템	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박*길 1*	123444462 외 3건	1,512,850	후납우편료
박*용(전북**)	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흥**로 1*, 3층	124756354 외 1건	37,220	후납우편료
(주)세*에*텍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***로 1**	124412476 외 1건	499,820	후납우편료
다*환경기술(주)	전북특별자치도 완산구 중**동 2**-1, 1층	122249769 외 9건	25,804,760	국유재산 사용료